

# 재정위원회

## 1. 목적

합동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교회의 재무행정을 담당하며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역할

- 1) 재정위원회는 회계와 재무서기가 봉사할 때 합동임원회의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 2) 매년 교회 예산 수립을 위한 정책을 목사 및 합동위원장과 상의하여 합동위원회에 건의한다
- 3) 합동위원회가 채택한 예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한다.
- 4)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재정을 관리한다.
- 5) 장정의 규정과 합동임원회의가 정한 정책에 따라 교회 회계와 임원의 일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6) 재정위원장은 합동임원회의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District Steward를 겸한다.

## 3. 조직/임원

- 1) 재정위원장과 재정위원 (공천위원회의 추천) 및 당연직위원 (합동위원장, 평신도대표, 회계, 연회대표, 재단관리이사회에서 파견된 1명)으로 구성된다.
- 2) 교회 회계와 재무서기의 직분을 합쳐서 한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이 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계 가족이어서도 안된다.

## 4. 책임/행사

- 1)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합동임원회의에 제출한다. 연간 예산에 포함할 모든 항목 들은 먼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예산안을 해마다 종합하여 작성해 교회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한다.
- 3) 재정위원회는 합동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금 안을 작성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 4) 재무담당임원의 회계 기록을 매년 감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구역회에 보고한다.
- 5) 합동위원회 및 구역회에 정기적인 재정 보고를 한다.
- 6) 재정위원회는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으며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을 적어도 두 명 선정하여 그들에게 현금을 계산하게 한다. 그들은 재무서기의 감독하에 일한다. 수입금의 모든 기록은 재무서기와 회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재무서기는 현금 내용과 지급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 8) 교회 회계는 보유하고 있는 세계 봉사기금과 연회 분담금을 매달 연회에 지급한다.

선교 기금비로 들어온 헌금은 그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회계는 수입/지출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와 합동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 5. 기타

- 1)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내부감사를 위하여 그 방침을 서면으로 규정하여 놓아야 한다. 이 방침은 매년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재정위원회가 검토하여 구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재정위원회는 교회 및 종속기관의 모든 재무기록을 연례적으로 감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동위원회는 철저하고 완전한 제정보고서를 매년 구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회 내부감사란 재정보고와 장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일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장부를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뜻한다.
- 3) 회계감사는 재정보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므로, 교회 재산이 잘 보호되어 있는지, 또한 지역의 국법과 개체교회의 방침과 절차, 그리고 “장정”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를 확인 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 4) 교회의 예산이 채택된 후, 추가 지출 또는 예산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합동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